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4.3.25.



통계청
Statistics Korea

〈차 례〉

I . 조사개요	1
II .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4
III . 조사설계	6
IV . 자료수집	12
V .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22
VI . 자료처리	24
VII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28
VIII . 통계기반 및 개선	43
IX . 참고문헌	45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광업제조업조사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조사개요

1. 통계명

광업제조업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9호)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8호)

3.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기업회계결산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자계식)하거나 조사담당자가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타계식)으로 조사
 - 2007년부터 조사방법의 다양화와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인터넷 조사 병행 실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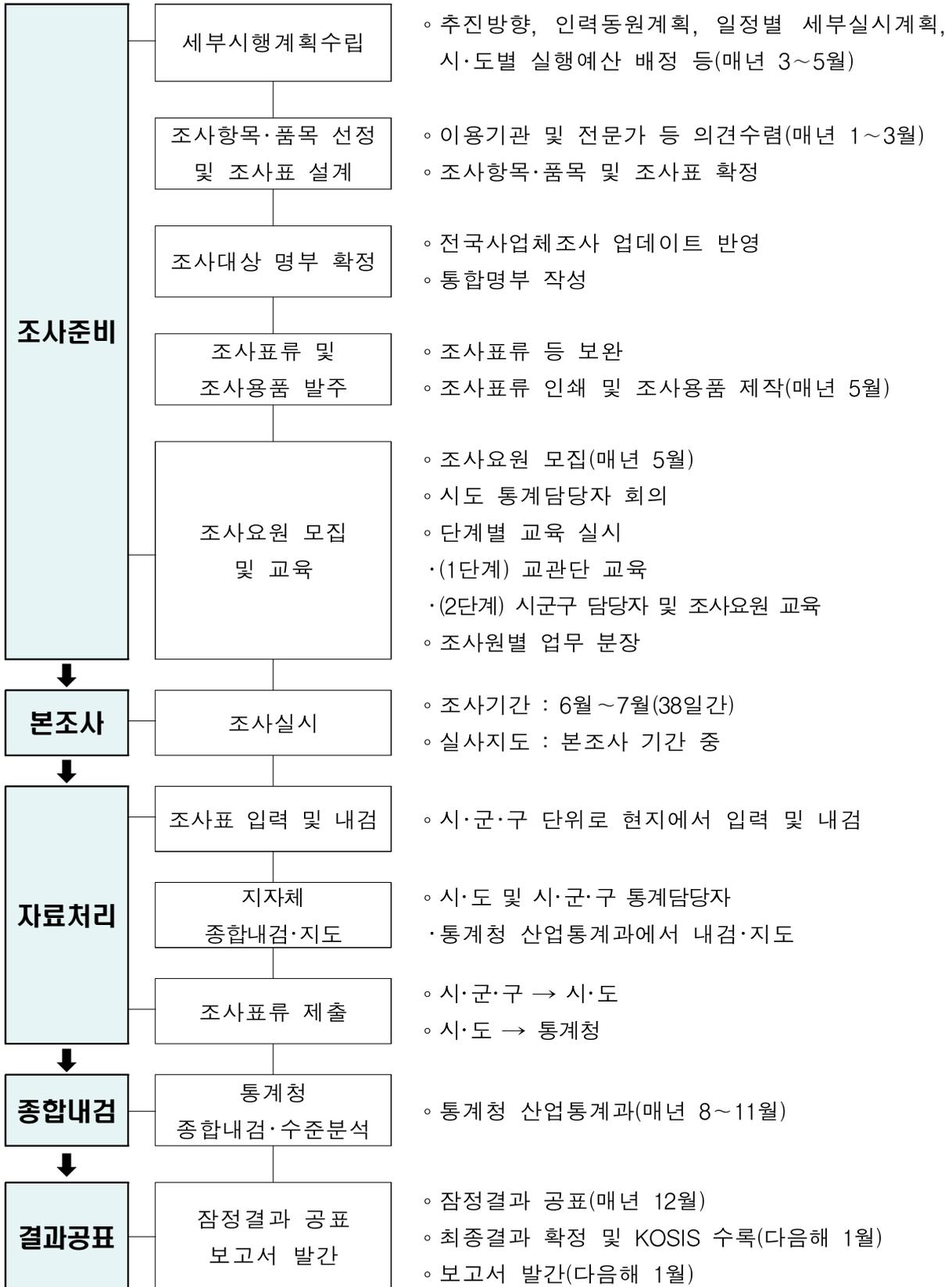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년
- 공표주기 : 매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업무흐름도



7. 조사연혁

□ 개발배경

- 광업·제조업부문의 구조 및 분포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통계조사가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됨
- 광업·제조업 부문의 표본조사 실시를 위한 정확한 모집단 틀과 GDP, 산업연관표 등 주요 가공·분석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됨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조사대상 : 종사자수 5인 이상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실시기관 변경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02년 5월 : 통계명칭 변경

- 광공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및 통계명칭 변경

- 종사자수 5~9인 표본조사(3만개),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2008.10.27. 변경승인)

□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23년(2022년 기준 조사) : 제45회 조사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광업·제조업 관련 주요경제(GDP, GRDP 추계, 산업연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광업·제조업 관련 각종 통계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 등)의 모집단자료
 - OECD 자료제공 등 국제 비교자료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사업체
조사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표본개편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광공업생산지수는 현재의 생산 수준을 측정하여 국내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기 경제지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작성 및 공표
조사주기	연간	매월
조사방법	면접	면접 타계식 및 자계식(CASI) 병행
조사항목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품목별 생산·출하·재고, 품목별 생산 능력 등
표본추출	전수조사	표본조사
공표주기	연간	월간

□ 정책활용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각종 경쟁정책 수립,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수립시 독과점 시장구조 고착 여부, 시장규모 등을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대상 업종 선정
- 시장 중점감시 대상업종 선정시에도 시장집중도, 시장규모 등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활용

- 개별 사건처리 시 조사결과 활용

- 품목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등은 심사보고서상의 시장 현황 자료작성 등에 참고

- 시장구조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여 시장구조의 집중화 정도,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간표 작성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법령에 직·간접으로 광업·제조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 (통계기반정책관리) 광업·제조업조사관련 통계지표를 정책에 통계활용으로 권고한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주요 이용기관	활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 대학 및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추계 및 산업연관표 작성 • 산업구조분석 및 산업정책 수립 • 중소기업 인력수급분석 및 지원 • 산업구조분석 및 시장 집중도 • 산업구조 및 노동생산성 분석 • 관련 산업 연구 및 분석 • 지역정책수립 •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 등

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항목 체계

①사업체명	②사업체대표자	③소재지	④창설연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조직형태	⑦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⑨영업비용	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⑪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⑫재고액	⑬유형자산(사업체)		

□ 항목별 용어 정의

1. 사업체명

-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으로 공장명까지 세부적으로 기입

2. 사업체대표자

-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성명, 성별을 기입,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기입

3. 소재지

- 도로명, 건물번호 및 빌딩·시장·상가 등의 명칭으로 기입하며, 층/호까지 자세하게 기입
- 지번 주소 병행 작성

4. 창설연월

- 사업체(공장)가 실제 광업 또는 제조업 활동을 시작한 연월을 기입
-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 등은 기업(본사)의 창설연월이 아닌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 등의 창설연월을 기입
- 조직형태가 변경(개인사업체→회사법인)된 연월을 기입

5.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 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

6.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 **회사이외법인** : 상법 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6-3. 사업체 구분

-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는 단 하나의 사업체
- **본사, 본점 등**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 **공장, 지사 등**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가 별도로 있으면서 소속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

6-4. 기업총매출액

- 본사 및 타사업체를 포함하며 광업·제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도·소매업 등)의 매출액이 포함된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입

7.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1) 종사자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계절별로 변동이 큰 경우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자
 -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지급받는 자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일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청소, 경비 등 지원서비스를 위해 받은 종사자는 제외)
- (2)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으로 각종 세금공제 이전 급여 총액을 기입(상여금, 각종 수당 등은 포함)
- 2020년 이전에 체불된 급여액을 2021년에 지불한 경우는 제외하고, 2021년도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3) 연간 조업월수 :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제 조업한 개월 수를 기입

8.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위탁생산(원재료 제공)한 제품의 출하액
 - 10항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의 (1) 출하액 합계와 일치
 - 동일 기업내 타공장에 무상 양도한 제품(반제품 포함)도 생산자 가격으로 계산하여 조사
 -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들어온 제품의 출하액은 제외
- 수리수입액(자사 생산 제품 수리수입액) : 생산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다른 회사 소유의 산업용 기계, 장치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의 출하액은 제품출하액으로 조사

9.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와 원가명세서의 동일한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하되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로 구분하여 당해 공장의 실적만 기입(광업 및 제조업부문 이외 비용은 합계만 기입)
- 영업비용은 해당 사업체(공장)의 실적만 기입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광업 및 제조업 부문 +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

10.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 제품명 : 사업체(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고, 영문 및 전문용어인 경우 제품명 뒤에 괄호로 제품의 용도 등을 알기 쉽도록 기입
- 출하액 : 생산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입하고, 출하액 합계는 8항 ①과 일치
 - 동일 기업 내 타공장·영업소 등으로의 내부 거래분도 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기입
- 재고액 : 완제품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하고, 재고액 합계는 12항 ①과 일치(상품재고 제외)

11.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탁제조한 수입액이 있을 경우 임가공제품별로 기입
- 임가공수입액 합계는 8항 ③과 일치

12. 재고액

- 완제품 재고는 제품재고(자사 및 위탁생산제품)에 한하며, 상품재고는 상품재고란에 기입
- 순수 임가공사업체는 ①완제품, ②반제품, ③재공품 재고액이 없어야 함

13. 유형자산(사업체)

- 기업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체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자산만 기입
- 대상 사업체의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하며, 동일 기업 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 및 임차사용 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사용 원재료명 : 약어는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주된 품목에 사용되는 원재료명을 기입

* 주요 생산공정 : 주요 생산공정은 주된 제품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부터 최종 산출까지의 공정을 기초 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순으로 요약하여 기입

□ 주요 용어에 대한 국제 및 국내기준

○ ‘사업체’ 대한 국제 및 국내기준

작성기관 및 조사명	개념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통계청 경제총조사	”
UNSD* IIP** (UN 통계처 산업생산지수)	단일 지역에서 단일 생산활동을 수행되거나 주요 생산활동이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분

*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 통계처

** IIP: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 산업생산지수

○ ‘기업체’ 대한 국제 및 국내기준

작성기관 및 조사명	개념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통계청 경제총조사	”
UNSD* IIP** (UN 통계처 산업생산지수)	재정 및 투자 결정 및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을 할당하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는 경제적 거래자다. 기업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일 기업은 단일 법적 단위가 될 수 있다.

○ ‘조직형태’ 대한 국내기준

조직형태	개념
개인사업체	개인이 혼자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 예시) 대리점이나 체인점 등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직영·비직영에 따라 회사법인(직영)과 개인사업체(비직영)로 구분
회사법인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 상법 규정에 의해 국내에 지사·지점을 설치한 외국회사의 지사·지점 예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면 회사법인에 해당
회사이외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예시)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등

□ 항목별 조사목적

<조사항목>	<조사목적>
1. 사업체명 2. 사업체대표자 3. 소재지 4. 창설연월 5. 사업자등록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누락 또는 중복 여부 확인 - 소지역(읍·면·동 등)단위 통계작성 - 사업체의 생성·소멸상태를 파악하고 모집단 표본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조직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형태 및 사업체 구분별 경영실적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구조변화를 파악 - 사업체별 조사를 기업체로 연계하여 기업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7.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 및 성별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규모별 부가가치율 등의 비율산정자료
8.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별 경영실적 파악 및 GDP, GRDP 추계 등에 활용
9. 영업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체 및 산업별 부가가치 추정 - 사업체별 경영실적 파악 및 GDP, GRDP 추계 등에 활용
10.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제품출하액과 재고액을 조사하여 중분류/품목별 산업구조 파악 - GRDP상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추계
11.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공업체 수입액 및 구조 파악
12. 재고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완제품, ② 반제품, ③ 재공품, ④ 원재료 및 보조재료, ⑤ 저장품(연료 등)별 재고 집계액 및 재고증감 추계 - GRDP상 재고 추계
13. 유형자산(사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자산구조와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여 투·융자정책 수립 등에 활용 - GRDP상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

1-2. 적용 분류체계

□ 통계 수집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7.1.) 적용

○ 개요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임
-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임

○ 내용

- 대분류 및 중분류(중분류는 광업 및 제조업만 표기)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8 전기장비 제조업
B 광업(05~0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 금속 광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32 가구 제조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C 제조업(10~34)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식료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1 음료 제조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2 담배 제조업	F 건설업(41~42)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G 도매 및 소매업(45~4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J 정보통신업(58~6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L 부동산업(68)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P 교육 서비스업(8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4 1차 금속 제조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U 국제 및 외국기관(99)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사업체 정의*에 부합되는 대한민국 내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 조사모집단

- 조사기준일(12월 31일)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B.광업」, 「C.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주·부사업 관계없음
- ② 국내 소재 사업체
 - 물리적으로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여야 함
- ③ 2021년 중 조업(생산)실적이 있는 사업체
 - 2021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모두 조사대상임
- ④ 2021년 12월말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월평균 종사자 수로 파악

□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 목표모집단은 전국에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로 약 58만2천개 사업체 정도로 추정(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되나 조사모집단은 9인 이하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약 50만2천개를 제외한 약 8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IV.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기업회계결산서를 참조하여 직접작성(자계식)하거나 조사담당자가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타계식)으로 조사
- 2007년부터 조사방법의 다양화와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 조사원 채용

- 모집기관 : 시·군·구의 기관장
- 모집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 도서 및 원거리지역은 가급적 현지 조사원을 모집
- 수행업무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 및 작성된 내용 검토
 - 조사표 내검시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착오여부, 산업분류 등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내용은 재확인 및 수정보완

2-2. 조사원 교육훈련

□ 조사원 교육

- 교육 일정 : 2023.6.1.(목) ~ 6.13.(화) 기간 중 1일
- 교육 대상 : 지자체 담당공무원, 조사요원(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 교관 : 산업통계과 광업제조업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 교육내용 : 각종 사례 및 교육 요령, 조사표 작성 실습 등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30	등 록	참석자 서명
09:30~10:10	안전 교육(현장조사 및 코로나 관련)	동영상 시연
10:10~10:20	휴 식	
10:20~11:00	조사원 준수사항, 현장조사 요령 조사개요 및 조사업무 수행절차	
11:00~11:10	휴 식	
11:10~12:00	조사표 작성요령 I	교 재 편
12:00~13:00	중 식	
13:00~13:50	조사표 작성요령 II	교 재 편
13:50~14:00	휴 식	
14:00~14:50	내용검토 및 종합내검	교 재 편
14:50~15:00	휴 식	
15:00~15:50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교 재 편
15:50~16:00	휴 식	
16:00~16:50	조사표 작성 실습(I)	
16:50~17:00	휴 식	
17:00~18:00	조사표작성 실습(II) 질의응답 및 전달사항	

2-3. 조사원 업무량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배정 절차

- 업무량 배정은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 조사원 1명의 1일 표준 업무량 : 조사표 3.1매 내외
- 지역별 면적 대비 사업체 분포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

* 1일 업무량 및 단가=사업체당 면적(시·군·구 면적)/사업체수

사업체면적	사업체당 단가	사업체 수
10km ² 미만	23,638원	3.1개
10km ² 이상~100km ² 미만	28,184원	2.6개
100km ² 이상	34,895원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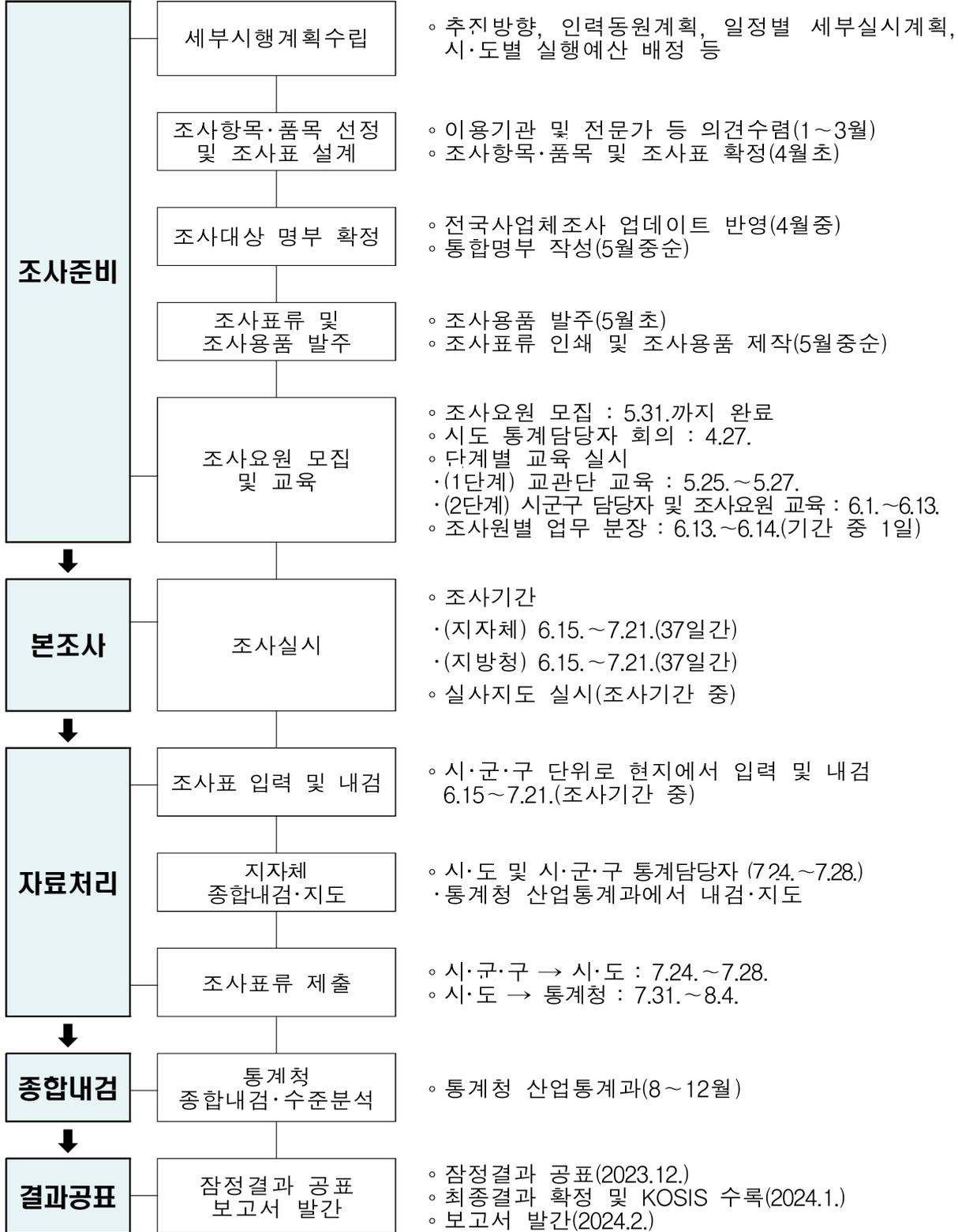
○ 배정 방법

-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업무 흐름도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 본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홍보
 - 경제통계 통합조사 보도자료 작성·배포
 - 본청장님 조사대상 사업체 방문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광고
 - 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경제통계 통합조사 배너연결 및 협회지 안내문 게재
 - 조사 대상사업체에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조사일정 홍보문구를 삽입한 홍보물품 제작
 - 통계청 홈페이지 알림판 안내 및 조사홈페이지 링크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 오픈
- 지방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홍보
 - 지역신문 및 방송사, 인터넷 신문 보도자료 작성·배포
 - 지방청 청사 및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현수막 설치
 - 조사 대상사업체(관할지역 전체)에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관내 공공 전광판 광고
 - 지역 방송(TV, 라디오) 자막방송 및 광고
 - 홈페이지 알림판 및 배너광고
- 지자체 경제통계 통합조사 홍보
 - 지자체 청사 및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현수막 설치
 - 지역신문 및 방송사, 인터넷 신문 보도자료 작성·배포
 - 조사 대상사업체(관할지역 전체)에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조사일정 홍보문구를 삽입한 홍보물품 제작

□ 응답자 사전통지 실시여부

- 조사 대상사업체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지방청/지자체 1회
 -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30인 이상에 대해 본청에서 발송, 지자체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해 자체 발송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및 기입시 유의사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표 기입요령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 ▶ 이 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 1. 1. ~ 12. 31. 까지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합니다.
 - 회계연도 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 최근 결산기의 실적을 조사합니다.
- ▶ 동일 기업내에 본사·공장·영업소 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으나 본사에서 회계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이라도 공장별 출하액, 종사자수, 유형자산 등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체(공장)의 실적만을 분리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 조사표에 인쇄된 항목은 전년도에 조사된 것이므로 변동이 있는 경우 적색 필기구로 두 줄을 긋고 수정해 주십시오.

1 사업체명

-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으로 공장명까지 세부적으로 기입

2 사업체대표자

-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성명, 성별을 기입,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기입

3 소재지

- 도로명, 건물번호 및 빌딩·시장·상가 등의 명칭으로 기입하며, 층/호까지 자세하게 기입
- 지번 주소 병행 작성

4 창설연월

- 사업체(공장)가 실제 광업 또는 제조업 활동을 시작한 연월을 기입
-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 등은 기업(본사)의 창설연월이 아닌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 등의 창설연월을 기입
- 조직형태가 변경(개인사업체→회사법인)된 연월을 기입

5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 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

6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 **회사이외법인** : 상법 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63 사업체 구분

-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는 단 하나의 사업체
- **본사, 본점 등**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 **공장, 지사 등**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가 별도로 있으면서 소속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

64 기업총매출액

- 본사 및 타사업체를 포함하며 광업·제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도·소매업 등)의 매출액이 포함된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입

7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1) **종사자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계절별로 변동이 큰 경우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자
 -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지급받는 자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일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청소, 경비 등 지원서비스를 위해 받은 종사자는 제외)
- (2)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으로 각종 세금공제 이전 급여 총액을 기입(상여금, 각종 수당 등은 포함)
- 2020년 이전에 체불된 급여액을 2021년에 지불한 경우는 제외하고, 2021년도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3) **연간 조업월수** :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제 조업한 개월 수를 기입

8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위탁생산(원재료 제공)한 제품의 출하액
 - **10**항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의 (1) 출하액 합계와 일치
 - 동일 기업내 타공장에 무상 양도한 제품(반제품 포함)도 생산자 가격으로 계산하여 조사
 -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들어온 제품의 출하액은 제외
- 수리수입액(자사 생산 제품 수리수입액) : 생산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다른 회사 소유의 산업용 기계, 장치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의 출하액은 제품출하액으로 조사

9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와 원가명세서의 동일한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하되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로 구분하여 당해 공장의 실적만 기입(광업 및 제조업부문 이외 비용은 합계만 기입)
- 영업비용은 해당 사업체(공장)의 실적만 기입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광업 및 제조업 부문 +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

10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 제품명 : 사업체(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고, 영문 및 전문용어인 경우 제품명 뒤에 괄호로 제품의 용도 등을 알기 쉽도록 기입
- 출하액 : 생산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입하고, 출하액 합계는 **8**항 ①과 일치
 - 동일 기업 내 타공장·영업소 등으로의 내부 거래분도 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기입
- 재고액 : 완제품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하고, 재고액 합계는 **12**항 ①과 일치(상품재고 제외)

11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탁제조한 수입액이 있을 경우 임가공제품별로 기입
- 임가공수입액 합계는 **8**항 ③과 일치

12 재고액

- 완제품 재고는 제품재고(자사 및 위탁생산제품)에 한하며, 상품재고는 상품재고란에 기입
- 순수임가공사업체는 ①완제품, ②반제품, ③재공품 재고액이 없어야 함

13 유형자산(사업체)

- 기업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체의 자산만 기입
- 대상 사업체의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하며, 동일 기업 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 및 임차사용 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사용 원재료명** : 약어는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주된 품목에 사용되는 원재료명을 기입

* **주요 생산공정** : 주요 생산공정은 주된 제품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부터 최종 산출까지의 공정을 기초 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순으로 요약하여 기입

3-4.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방법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조사관리자의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도록 조사원 진척사항 점검
- 조사원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업무 수행 전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 사업체 방문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여 의문사항 발생 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함
- 조사기간 중 조사원증을 지참하여 조사 시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됨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처벌]
-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대리조사 및 탁상조사 금지(허위 작성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
- 안전사고에 유의, 영업행위나 종교활동 금지, 안전사고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원 각자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함

□ 조사관리자의 1인당 조사원 수 및 역할

- 조사관리자의 1인당 조사원 수 : 4~6명 내외
- 조사관리자 역할
 - 조사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내검)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함
 - ※ 조사완료 시점에서 불완전한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원이 작성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 확인
 - 산업분류 착오 및 유고사업체에 대한 철저히 재검토 실시
 - ※ 특히, 신규사업체의 품목분류 부호 재확인
 - 응답불응 사업체 현장 방문 독려 및 조사표 편철·인계
 - 조사원이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조사원 및 응답자 등의 조사관련 질의발생 시 응답체계
 - 1단계 : 조사지침서 등을 항시 소지하며, 조사원은 응답자의 질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 질의 답변이 애매한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알리고 답변토록 함
 - 2단계 : 콜센터 및 시스템 내의 공지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여 조사원의 질의응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알림
 - 3단계 : 본청(산업통계과 광제조팀)에서 최종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
- 조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 조사기간 중 각 중분류 담당자가 조사원 질문에 실시간 응답
- 조사기간 중 본청 담당자가 실사지도 방문
 - 지자체(시군구) 및 지방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질의응답 답변

□ 주요 질의 응답 사례

- 조사지침서 부록편에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이 수록되어 있음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적격 응답자

- 응답자 : 사업주, 경리 및 재무회계 담당자 등
- 지정 이유
 - 조사표 작성에 충분한 이해와 답변이 가능한 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사표 내용이 대상 사업체의 중요한 기밀 사항이므로 자료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결재 등 공식 제공 절차를 거쳐 응답하고 있음

4-2. 기억응답

□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조사 응답

- 재무제표를 활용한 조사표 작성
 - 재무상태표 : 조사항목 ⑫재고액, ⑬유형자산 활용
 - 손익계산서 : 조사항목 ⑧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⑨영업비용 활용
 - 제조원가 명세서 : 조사항목 ⑨영업비용 활용
- 부속명세서를 활용한 조사표 작성
 - 임금대장 및 근무상황표 : 조사항목 ⑦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활용
 - 매출액명세서(제품수불명세서) : 조사항목 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활용
 - 유형자산 명세서 : 조사항목 ⑬유형자산 중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활용

- 감가상각비명세서 : 조사항목 ⑬유형자산 중 연간감가상각비 활용
- 재고자산명세서 : 조사항목 ⑫재고액 활용

4-3. 무응답 대처

□ 무응답 대처방법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 불응대상처 개념
 - 비협조대상처를 2회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응답거부 시 불응사업체로 간주
 - 핵심항목 ⑧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영업비용, 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에 대해 조사거부 시에는 전체거부로 간주
- 불응 설득횟수 인정요건
 - 응답자를 직접 만나 조사협조를 요청한 경우만 불응 설득횟수에 포함함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통화로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
 - 조사대상처에서 명확한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방문한 횟수는 불응 설득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설득 방문 시마다 「불응사업체 설득 현황」 기록
- 설득 단계별 과정
 - 2회의 단계별 추가 설득 과정에서 2회차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른 조사원,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 등의 설득 동행 방문을 원칙으로 함

1회차	조사원이 조사협조 공문을 전달하면서 추가 설득
2회차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른 조사원(또는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등 설득 동행 방문 원칙

· 전화통화로 조사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처리 방법

1회차	조사원이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업무담당자와 전화
2회차	2회차는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

- 불응대상처 처리

- 2회차 추가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 시, 「불응사업체 설득 현황」 을 작성하여 팀장,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불응 처리
- 통계청 보고 : 시·도 및 지방청 총괄담당자가 취합하여 통계청으로 보고



○ 장기부재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장기 부재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연락이 되는 사업체는 인터넷조사를 적극 권장

- 해당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사업주에게 사업체의 상황을 문의하여 파악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 장기 휴업으로 폐업이 예상되더라도 휴업으로 처리

V.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조사항목 대체

- 영업비용
 - 조사대상 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개인 및 단독법인이면서 활동업종에 겸업(광업제조업 이외 업종)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사업소득(복식) 자료의 비용 항목별* 일괄대체
 - *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22개 항목
-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 조사대상 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회사법인인 경우 법인세 자료의 동일 항목 일괄대체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수집 및 관리기관, 유지관리 방법,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수집 목적 : 과세(법인세, 사업소득세)
- 수집 내용
 - 법인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신고 항목
 - 사업소득신고자료 : 복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신고 항목
- 수집 과정 및 방법 : 법인 및 개인이 국가가 정한 일정기간에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고
- 수집 일정
 - 법인세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신고
 - 사업년도(1.1-12.31)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사업년도(전년도 7.1- 6.30) : 9월말까지
 - 사업소득세 : 사업년도(1.1-12.31) 익년 5.1-5.31일까지
- 수집 및 관리 기관 : 국세청
- 유지관리 방법 : 시스템으로 유지 보안 관리
-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국세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목적으로만 활용함

□ 법적근거

○ 통계법 (법률 제14843호, 2017.8.9.)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1조의13(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10.19, 시행)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코드체계

- 행정구역분류부호 :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 중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2자리 기입
- 조사구 일련번호 :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구 번호
- 사업체 일련번호
 - 건물번호 : 조사구별로 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사업체번호 : 건물별로 사업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의 이동, 기타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부여한 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사업체에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고하여 산업세세분류단위(5자리)까지 기입
- 품목분류 : 각 세세분류마다 3자리숫자(…100 ~ …999) 부여, 임가공품목은 'sc'로 시작

2. 자료입력

□ 조사표 입력

- 사업체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내용을 입력
- 조사표 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참조

□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입력 후 「오류사업체 검색 및 수정」에서 오류사업체를 검색하여 수정 및 보완
 - 필수오류 : 반드시 내용을 수정해야 함
 - 검토오류 : 검토 후 오류이면 수정하고, 맞으면 사유를 입력
- 오류 리스트 :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부록 참조

NO	오류코드	항목명	오류내용
1	P9901	행정구역분류부호	『행정구역분류부호』가 누락된 경우
2	P0101	사업체명	1. 『사업체명』이 누락된 경우
3	P0201	사업체대표자 명	2. 『대표자명』이 누락된 경우
4	G0401	창설년도	4. 『창설년 < 1900』인 경우

□ 자료입력 교육

- 조사원 교육 훈련시 함께 실시하고 있음
 - 참고 : IV. 자료수집의 「2-2 조사원 교육훈련」

3. 자료내검

□ 현장조사 및 내용 검토 흐름도

현장조사 및 내용 검토 흐름도



□ 조사표 내용검토

가.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대상 사업체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종사자 기준)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확인
 - 해당 시·군·구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특히 종사자 100인 이상)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담당 공무원(조사관리자)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

나. 광업제조업명부

- 광업제조업명부의 변동부호를 정확하게 처리 했는지 확인
- 광업제조업명부의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수와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광업제조업명부의 변동부호 '00.변동없음, 21.신규·누락, 22.전입'의 개수와 완료된 조사표 수가 일치해야 함
- 광업제조업명부 수정 시 사업체명만 수정하고 나머지 항목을 수정하지 않았는지 확인

다. 조사표 내용 검토

(1) 해당 사업체(공장)분만 조사되었는가?

- 사업체(공장)가 2개 이상인 경우 ⑥-4기업총매출액과 ⑧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합계 비교

$$\text{⑥-4 기업총매출액} \geq \text{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합계}$$

(2)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로 분리 조사되었는가?

⑦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 제조업 부문 종사자를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기입하고,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를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에 기입
- 종사자를 부문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출하액 기준으로 비율 배분

⑧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 제조업 부문의 출하액 및 수입액 등을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기입하고, 도소매업 부문을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의 ⑤ 구입상품매출액에 기입

⑨ 영업비용

-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원가명세서 금액은 모두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출하액 기준으로 비율 배분하여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83%)은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반영하고 도소매업부분(17%)은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에 반영

(3) 조사표상에 조사된 품목분류부호와 「산업 및 품목분류」의 품목분류부호가 일치하는가?

(4)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에 출력된 제품과 신규 또는 누락된 생산제품이 제대로 조사되었는가?

(5) ⑧-③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이 ⑩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에 임가공 품목별로 조사되었는가?

(6) 조사항목 간에 일치되어야 할 내용은 반드시 확인했는가?

⑦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2) 연간 급여액 (ㄱ)소계	=	⑨ 영업비용 ⑦ 급여총액
⑧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① 제품출하액	=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1) 출하액(내수+수출) 합계
⑧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③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합계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2) 연초재고액 합계	=	⑫ 재고액 ① 완제품 (1) 연초재고액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3) 연말재고액 합계	=	⑫ 재고액 ① 완제품 (2) 연말재고액

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 무응답 발생 여부

-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우 항목 무응답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항목에 대한 부분불응은 인정하지 않고 핵심항목(⑧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영업비용, ⑩연간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에 대해 불응인 경우에도 전체 불응으로 간주

4-2. 단위무응답 실태

□ 불응률

구분	2018	2019	2020	2022
불응률(%)*	0.4	0.5	1.1	1.2

* 불응률 = 불응 사업체수 / 적격 사업체수 * 100, 2021년은 경제총조사로 제외

□ 무응답 사유

- 국가기관 불신에 따른 통계조사 불응
- 여러 기관의 잦은 조사에 따른 영업방해, 불이익 초래 주장
- 대표자 지시(회사방침 등) 및 담당자의 응답거부
- 국세청에 자료 제출했다며 응답거부
- 바쁘다, 이유없음, 필요성 없음, 응답의무 없음 등 무조건 조사회피

Ⅶ.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B 광업	4	7	10	11
C 제조업	25	85	183	477
계	29	92	193	488

○ KOSIS 통계표 제공

- 산업편

1	시도(시군구)/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명 이상)
2	시도/산업분류/종사자 규모별 주요지표(10명 이상)
3	시도/산업분류/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10명 이상)
4	시도/산업분류별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및 주요생산비(10명 이상)
5	시도/산업분류별 재고액(10명 이상)
6	시도/산업분류별 유형자산 증가액, 감소액 및 연말잔액(10명 이상)
7	산업분류/경영조직별 주요지표(10명 이상)
8	산업구조별 주요지표(10명 이상)
9	시도/산업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급여액(10인 이상)
10	시도/산업분류별, 성별 대표자수 및 종사자수(10인 이상)

- 품목편

1	품목분류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및 연말재고액(10명 이상, 2019년)
2	임가공품목별 사업체수 및 수입액(10명 이상, 2019년)

- 기업체편

1	기업체통계 총괄
2	산업중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종사자규모별 기업체수
3	산업중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종사자규모별 종사자수
4	산업중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종사자규모별 부가가치
5	산업중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종사자규모별 유형자산 투자
6	산업소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별(전체기업)
7	산업소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별(다공장기업)
8	산업소분류/경영조직/자본금규모별(단독기업)
9	산업소분류/종사자규모별(전체기업) 총괄
10	산업소분류/종사자규모별(다공장기업) 총괄

□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주요 통계표

- 연도별 광업제조업 주요지표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

연도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출하액	증감률	부가가치	증감률
2003	55,297	0.6	2,339	0.2	631,903	6.5	238,117	5.3
2004	55,203	-0.2	2,400	2.6	745,046	17.9	282,978	18.8
2005	57,591	4.3	2,457	2.4	800,734	7.5	292,665	3.4
2006	59,306	3.0	2,498	1.7	858,211	7.2	305,616	4.4
2007	62,160	4.8	2,521	0.9	946,808	10.3	330,502	8.1
2008	58,823	-5.4	2,467	-2.1	1,115,798	17.8	369,322	11.7
2009	58,377	-0.8	2,465	-0.1	1,125,813	0.9	376,404	1.9
2010	62,751	7.5	2,648	7.4	1,328,896	18.0	437,166	16.1
2011	63,406	1.0	2,706	2.2	1,494,210	12.4	482,174	10.3
2012	64,235	1.3	2,764	2.1	1,510,608	1.1	482,681	0.1
2013	65,742	2.3	2,824	2.2	1,494,751	-1.0	481,387	-0.3
2014	68,989	4.9	2,916	3.2	1,489,572	-0.3	486,573	1.1
2015	69,269	0.4	2,958	1.5	1,432,727	-3.8	497,871	2.3
2016	69,126	-0.2	2,969	0.4	1,416,705	-1.1	506,589	1.8
2017	69,790	1.0	2,966	-0.1	1,515,029	6.9	545,752	7.7
2018	69,835	0.1	2,968	0.1	1,567,060	3.4	567,593	4.0
2019	69,975	0.2	2,940	-0.9	1,545,704	-1.4	559,764	-1.4
2020*(구)	70,081	0.2	2,896	-1.5	1,501,835	-2.8	554,105	-1.0
2020*(신)	71,116	1.6	2,922	-0.6	1,507,329	-2.5	556,768	-0.5
2021	72,864	2.5	2,949	0.9	1,768,983	17.4	643,655	15.6
2022	73,592	1.0	2,992	1.5	2,043,859	15.5	724,689	12.6

* 2020년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계열(조사기반)과 신계열(등록기반)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체수

(단위 : 개, %)

산업분류	2021년	구성비	2022년	구성비	증감률
B, C 광업 및 제조업	72,864	100.0	73,592	100.0	1.0
B 광업	354	0.5	332	0.5	-6.2
C 제조업	72,510	99.5	73,260	99.5	1.0
10 식료품	6,183	8.5	6,352	8.6	2.7
11 음료	279	0.4	282	0.4	1.1
12 담배	8	0.0	9	0.0	12.5
13 섬유제품	2,925	4.0	2,746	3.7	-6.1
14 의복·모피	1,995	2.7	1,999	2.7	0.2
15 가죽·신발	541	0.7	529	0.7	-2.2
16 나무제품	844	1.2	842	1.1	-0.2
17 종이제품	1,965	2.7	1,964	2.7	-0.1
18 인쇄·기록매체	1,210	1.7	1,203	1.6	-0.6
19 석유정제	151	0.2	150	0.2	-0.7
20 화학제품	3,330	4.6	3,396	4.6	2.0
21 의약품	674	0.9	684	0.9	1.5
22 고무·플라스틱	6,393	8.8	6,387	8.7	-0.1
23 비금속광물	2,832	3.9	2,811	3.8	-0.7
24 1차금속	3,045	4.2	3,129	4.3	2.8
25 금속가공	9,518	13.1	9,622	13.1	1.1
26 전자·통신	3,542	4.9	3,560	4.8	0.5
27 의료정밀광학	2,712	3.7	2,772	3.8	2.2
28 전기장비	4,756	6.5	4,852	6.6	2.0
29 기계장비	10,288	14.1	10,369	14.1	0.8
30 자동차	4,769	6.5	4,822	6.6	1.1
31 기타운송장비	1,479	2.0	1,655	2.2	11.9
32 가구	1,333	1.8	1,300	1.8	-2.5
33 기타제품	1,118	1.5	1,160	1.6	3.8
34 기계장비 수리업	620	0.9	665	0.9	7.3

- 종사자수

(단위 : 명, %)

산업분류	2021년		2022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B, C 광업 및 제조업	2,948,677	100.0	2,991,569	100.0	1.5
B 광업	10,734	0.4	9,805	0.3	-8.7
C 제조업	2,937,943	99.6	2,981,764	99.7	1.5
10 식료품	228,462	7.7	236,169	7.9	3.4
11 음료	16,337	0.6	16,229	0.5	-0.7
12 담배	2,583	0.1	2,692	0.1	4.2
13 섬유제품	74,169	2.5	71,276	2.4	-3.9
14 의복·모피	48,361	1.6	46,994	1.6	-2.8
15 가죽·신발	12,886	0.4	12,778	0.4	-0.8
16 나무제품	18,085	0.6	18,905	0.6	4.5
17 종이제품	60,109	2.0	59,864	2.0	-0.4
18 인쇄·기록매체	26,769	0.9	26,549	0.9	-0.8
19 석유정제	12,139	0.4	11,863	0.4	-2.3
20 화학제품	154,590	5.2	155,994	5.2	0.9
21 의약품	54,974	1.9	58,874	2.0	7.1
22 고무·플라스틱	217,210	7.4	212,664	7.1	-2.1
23 비금속광물	87,593	3.0	87,367	2.9	-0.3
24 1차금속	139,345	4.7	145,703	4.9	4.6
25 금속가공	245,650	8.3	249,578	8.3	1.6
26 전자·통신	350,893	11.9	351,750	11.8	0.2
27 의료정밀광학	101,724	3.4	104,417	3.5	2.6
28 전기장비	210,685	7.1	215,618	7.2	2.3
29 기계장비	340,489	11.5	345,833	11.6	1.6
30 자동차	328,939	11.2	335,771	11.2	2.1
31 기타운송장비	120,924	4.1	128,524	4.3	6.3
32 가구	28,658	1.0	28,379	0.9	-1.0
33 기타제품	27,095	0.9	27,425	0.9	1.2
34 기계장비 수리업	29,274	1.0	30,548	1.0	4.4

- 출하액

(단위 : 십억원, %)

산업분류	2021년	구성비	2022년	구성비	증감률
B, C 광업 및 제조업	1,768,983	100.0	2,043,859	100.0	15.5
B 광업	3,320	0.2	3,527	0.2	6.3
C 제조업	1,765,664	99.8	2,040,332	99.8	15.6
10 식료품	100,973	5.7	115,578	5.7	14.5
11 음료	12,160	0.7	14,188	0.7	16.7
12 담배	3,528	0.2	4,053	0.2	14.9
13 섬유제품	19,545	1.1	20,494	1.0	4.9
14 의복·모피	16,698	0.9	18,229	0.9	9.2
15 가죽·신발	3,737	0.2	4,078	0.2	9.1
16 나무제품	6,603	0.4	7,037	0.3	6.6
17 종이제품	26,080	1.5	28,125	1.4	7.8
18 인쇄·기록매체	5,262	0.3	5,609	0.3	6.6
19 석유정제	123,692	7.0	199,398	9.8	61.2
20 화학제품	186,842	10.6	217,947	10.7	16.6
21 의약품	27,847	1.6	32,193	1.6	15.6
22 고무·플라스틱	73,601	4.2	79,818	3.9	8.4
23 비금속광물	36,092	2.0	38,897	1.9	7.8
24 1차금속	177,989	10.1	201,927	9.9	13.4
25 금속가공	78,568	4.4	88,197	4.3	12.3
26 전자·통신	312,682	17.7	320,460	15.7	2.5
27 의료정밀광학	29,795	1.7	33,840	1.7	13.6
28 전기장비	113,169	6.4	146,060	7.1	29.1
29 기계장비	134,348	7.6	148,080	7.2	10.2
30 자동차	214,166	12.1	248,511	12.2	16.0
31 기타운송장비	42,712	2.4	46,893	2.3	9.8
32 가구	8,792	0.5	8,858	0.4	0.8
33 기타제품	6,043	0.3	6,354	0.3	5.1
34 기계장비 수리업	4,741	0.3	5,510	0.3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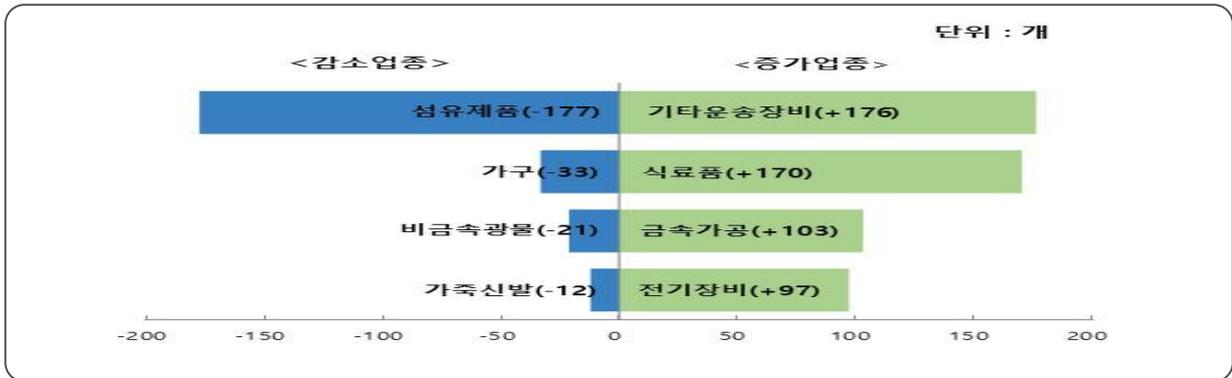
- 부가가치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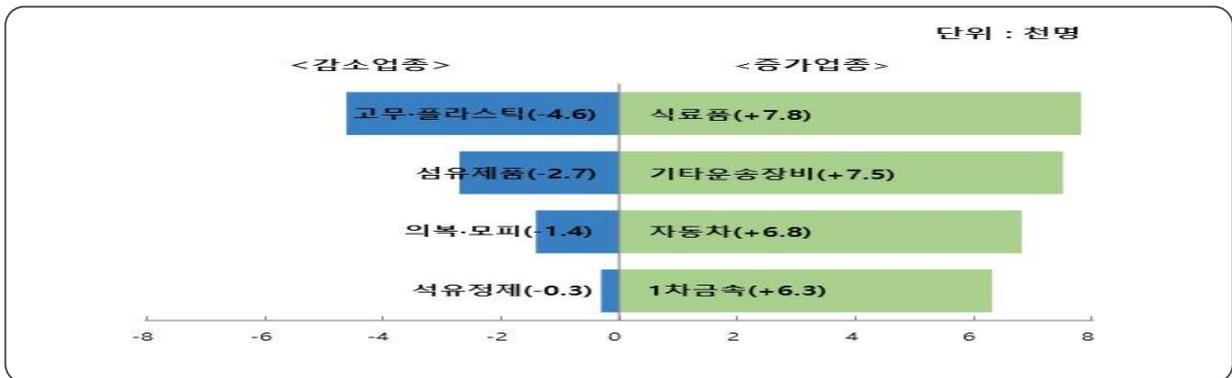
산업분류	2021년		2022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B, C 광업 및 제조업	643,655	100.0	724,689	100.0	12.6
B 광업	2,394	0.4	2,416	0.3	0.9
C 제조업	641,260	99.6	722,273	99.7	12.6
10 식료품	34,364	5.3	37,260	5.1	8.4
11 음료	6,570	1.0	7,367	1.0	12.1
12 담배	2,040	0.3	2,493	0.3	22.2
13 섬유제품	7,873	1.2	7,923	1.1	0.6
14 의복·모피	8,206	1.3	9,282	1.3	13.1
15 가죽·신발	1,420	0.2	1,586	0.2	11.7
16 나무제품	2,349	0.4	2,435	0.3	3.6
17 종이제품	8,787	1.4	9,283	1.3	5.6
18 인쇄·기록매체	2,507	0.4	2,662	0.4	6.2
19 석유정제	20,423	3.2	55,016	7.6	169.4
20 화학제품	57,695	9.0	58,582	8.1	1.5
21 의약품	18,088	2.8	20,099	2.8	11.1
22 고무·플라스틱	27,239	4.2	29,990	4.1	10.1
23 비금속광물	15,728	2.4	16,878	2.3	7.3
24 1차금속	42,330	6.6	43,725	6.0	3.3
25 금속가공	29,956	4.7	31,824	4.4	6.2
26 전자·통신	170,956	26.6	174,453	24.1	2.0
27 의료정밀광학	13,910	2.2	15,909	2.2	14.4
28 전기장비	35,403	5.5	47,492	6.6	34.1
29 기계장비	50,571	7.9	54,515	7.5	7.8
30 자동차	61,754	9.6	70,416	9.7	14.0
31 기타운송장비	13,098	2.0	12,747	1.8	-2.7
32 가구	3,864	0.6	3,702	0.5	-4.2
33 기타제품	2,646	0.4	2,806	0.4	6.0
34 기계장비 수리업	3,484	0.5	3,832	0.5	10.0

○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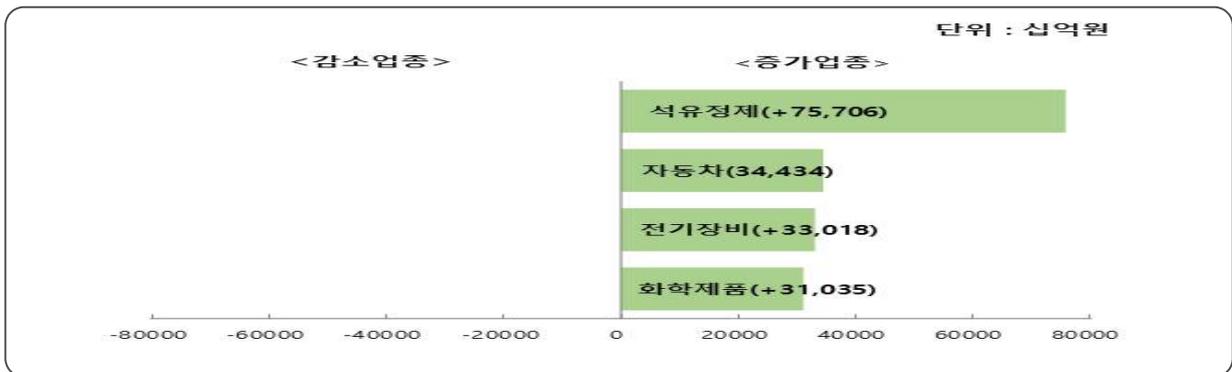
〈그림1〉 사업체수 주요 증감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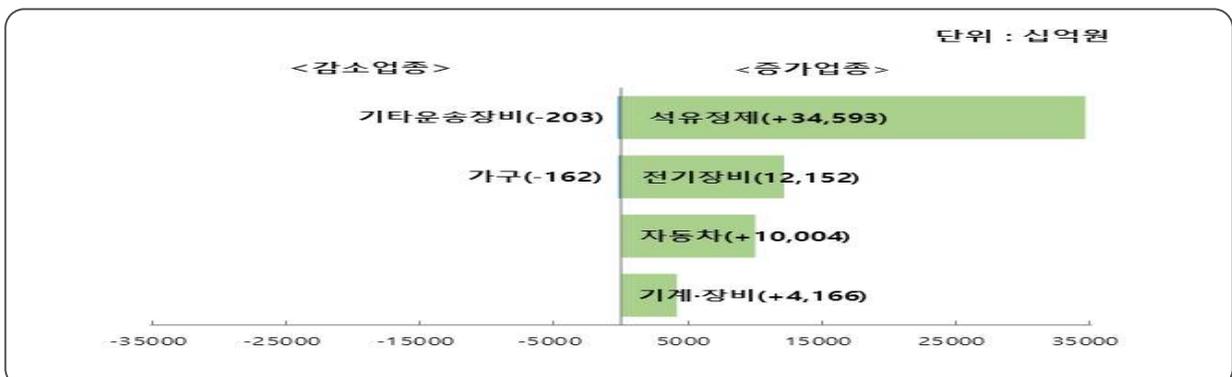
〈그림2〉 종사자수 주요 증감 업종



〈그림3〉 출하액 주요 증감 업종



〈그림4〉 부가가치 주요 증감 업종



□ 이용시 유의사항

- 이 자료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종사자 10인 이상)으로 2022년 실적을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 ※ 조사기간: 2023. 6.15. ~ 7.21. (기간 중 37일)
- 조사단위는 공장, 작업장, 사업장 등 개별 사업체이며, 결산자료를 기초로 명목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출하액, 재고액, 주요 생산비용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함.
 - 생산액 = 제품출하액 + (완제품 재고증감액 +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증감액)
 - 부가가치 = 생산액 - 주요 중간투입비(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가공비+수선비)
 - ※ 주요 중간투입비 : 제조과정에서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 간접 중간투입비는 제외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위 미만은 “0”으로 표시하였음.
- 산업분류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 이 자료는 잠정집계한 결과이므로 추후에 발표되는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최종 집계자료는 2024년 1월말 이후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임.

□ 성인지 관련 공표 통계

- 시도/산업분류별, 성별 대표자수 및 종사자수

시도별	산업별	항목(단위 : 명)	2022
전국	광업 및 제조업	대표자수(합계)	73,592
		대표자수(남)	65,031
		대표자수(여)	8,561
		종사자수(합계)	2,991,569
		종사자수(남)	2,280,436
		종사자수(여)	711,133
		상용근로자(합계)	2,795,884
		상용근로자(남)	2,142,265
		상용근로자(여)	653,619
		임시 및 일용 근로자(합계)	101,856
		임시 및 일용근로자(남)	68,802
		임시 및 일용근로자(여)	33,054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합계)	14,939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남)	12,140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여)	2,799
		기타 종사자 등(합계)	78,890
		기타 종사자 등(남)	57,229
		기타 종사자 등(여)	21,661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

- 조사 기준일 : 2022. 12. 31.
- 조사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조사 실시기간 : 2023. 6. 15. ~ 2023. 7. 21.(37일간)

공표시기

- 잠정발표 : 2023. 12. 12.
- 확정발표 : 2024. 1. 31.

2-2. 공표일정

공표일정

- 사전 공표일정 및 공개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주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0/index.action?bmode=list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 등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광업제조업조사 외국 사례

- 미국
 - 미국에서 실시되는 제조업 관련 조사는 연간 제조업조사(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 ASM)라는 이름으로 U.S Census Bureau에서 표본조사로 실시. 이 조사는 제조업의 활동내용이나 품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이 결과는 GDP와 GDP deflater를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산업생산지수 등의 관련 지수작성에도 활용되며, 경제정책 수립과 예측 등에도 다양하게 이용됨
 - 이 조사의 대상모집단은 북미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의 제조업(31~33)에 속하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고, 끝자리 숫자가 2, 7인 연도에는 Economic Census에서 전사업체를 조사하며, 그 외의 연도에는 ASM이 매년 우편조사방법으로

실시됨

표본의 규모는 약 350,000개의 대상 사업체 중 약 55,000개를 표본사업체로 선정하며, 이 중 약 25,000개는 대규모사업체로서 조사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표본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0,000여 개의 소규모사업체는 응답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표본 개편시 가능한 한 모두 교체하며, 표본개편주기는 5년임
조사결과는 업종별, 품목별, 지역별로 보고서가 발간되며, 인터넷이나 CD-ROM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음

○ 캐나다

- 캐나다의 연간 제조업·벌목업조사(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and Logging : ASML)는 제조업과 벌목업을 대상으로 Statistics Canada에서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조사임
조사대상은 북미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의 제조업과 벌목업에 속하는 사업체, 즉 약 100,000개의 제조업체와 17,000개의 벌목업체임
이 조사는 횡단면설계(cross-sectional design)의 표본조사이며, 행정구역(province), 산업(industry), 수익(revenue)에 의해 층화추출하여 우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며, 추가 무응답과 자료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함
캐나다의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해 데이터를 얻으며, 행정구역, 산업, 유용한 행정자료의 범위에 따라 표본의 비율을 조정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일본

- 일본의 경우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Census Manufacture를 실시하는데, 이는 국가전체의 제조업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또한 이 조사는 경제통계체계의 근간이 되며 경제백서, 중소기업 백서 등의 경제 분석 및 각종 경제지표에 데이터를 제공함
조사대상은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제조업'에 속하는 전국의 사업체이며, 이 중 국가에 속하는 사업체는 제외됨
이 조사는 끝자리 숫자가 0, 3, 5, 8인 해에는 전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며, 그 외의 연도에는 종사자 4명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매년 조사함
종사자 수에 따라 조사표 양식을 달리하여 조사하는데, 종사자 3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A형식의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하고, 종사자 수 29명 이하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약식인 B형식의 조사표를 이용함.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에 조사표를 배포하여 기입을 의뢰해서 회수하는 방식이며, 조사 실시로부터 약 9개월 후 속보가 공표되고 약 1년 3개월 후에 「제조업통계표」로서 산업편(Industry), 품목편(commodity), 시구정촌(市區町村)편(city, town and village), 용지·용수편(industrial site and water), 공업지구편(industrial district), 기업통계편(enterprise)을 확보로 공표함. 산업편은 종사자 4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일본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추가 되는 제조활동에 의해 산업을 부여하고 산업별로 집계한 것이다. 품목편은 종사자 4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각 사업체의 제조품 및 가공품을 품목별로 집계한 것이고, 시구정촌편은 종업원 4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주요한 조사항목을 시구정촌별로 집계함
 공업지구편은 종사자 4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주요한 조사항목을 도도부현별, 공업단지별로 집계함
 용지·용수편은 종사자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공업용지, 공업용수에 관한 조사항목을 집계, 공업용지·공업용수의 사용상황 등을 파악한 것임. 기업통계편은 종사자 4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단위의 조사결과를 기업단위로 전환하여 집계함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 3명 이하의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추계하는데, 사업수 및 종사자수는 공업조사준비조사명부에 의해 추계하며, 현금급여총액, 원재료사용액, 제조품출하액의 경우는 전국의 종사자 4~9명인 사업체의 산업세분류별(4자리)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도도부현별의 산업세분류별 값에 추계하고, 산업소분류(3자리), 산업중분류(2자리)에서 합한 값을 각 도도부현의 추계치로 하며, 이들을 합한 것을 전국의 값으로 함. 그러나 종사자 3명 이하의 사업체 중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있는 니가타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기후현에 대해서는 실사통계를 사용함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광공업생산지수

- 광업제조업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하금액을 조사하고 있는 반면, 광공업생산지수는 실제 물량을 조사하여 지수화하고 있음

구분	광업제조업조사	광공업생산지수
작성주기	연간	매월
조사대상	광공업사업체	광공업사업체
작성방법	조사	조사
조사범위	출하액	생산물량

4. 접근성 및 명료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 KOSIS
 - 자료 유형 : 통계 DB
 - KOSIS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광업·제조업
 - 자료 유형 : 통계 보고서
 - KOSIS > 온라인간행물 > 광업·제조업 >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 홈페이지
 - 자료 유형 : 보도자료
 - 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광공업·기업활동(사업체) > 광업제조업조사

4-2 연락처 정보

□ 담당자 :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142)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통계 설명자료 DB : <http://meta.narastat.kr>
 - 주제별 설명자료 > 광공업·제조업 > 광업제조업조사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설명자료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요구 및 제공 방법

- 요구 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요구
- 제공 방법
 - 추출·다운로드
 -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개인PC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 분석·활용
 -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 원격접근서비스는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원격분석서버에 접속하여 승인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된 자료는 개인 PC에 다운로드 할 수 없고, 원격 서버에서 분석한 뒤 분석 결과표만 통계청의 반출승인을 받아 개인PC에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이용센터서비스(RDC, Research Data Center)
 - 이용센터서비스는 외부 전산망이 차단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에서 가장 상세한 범위의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분석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RDC에 방문하여 분석PC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분석결과를 반출할 수 있음
 - 이용센터는 2021년 9월 기준 통계청(대전),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 한국개발연구원(세종), 통계데이터센터(서울 상암), 서강대학교(서울), 서울대학교(서울), 국회도서관(서울) 등 7곳에 설치·운영
 - 주문형 서비스
 - MDIS의 추출 및 다운로드에서 제공하는 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집계표(분석결과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며, 집계처리에 필요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됨
 - 마이크로데이터 CD
 -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모든 항목)를 CD로 제작하여 제공
 - 주문형 서비스를 통해 제공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1건(조사별 1개 연도)당 1만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

□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승인용, 특수목적용) 제공절차 및 제공기일

- 이용신청 : MDIS에 로그인하여 보안서약서·연구계획서 요약·통계자료 이용방법을 작성하여 신청, 분석결과를 반출 승인요청
- 소요기일 : 일반적인 신청·검토·자료생성·결과물 반출승인 기간(분석기간은 제외)은 5일 이내이며, 제공기준이나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이의 검토기간이 최소 2일, 최대 15일이 소요됨
- 원격접근서비스(RAS) : 장기 시계열자료, 자료 간의 연계, 인총의 모집단을 활용한 표본 추출,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일, 최대 15일
- 이용센터서비스(RDC) : 여러 종의 통계와 이용자의 보유통계 간의 연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모집단·분석틀·모형개발·통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최대 15일
- 주문형서비스 : 개인, 사업체 등 민감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자료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제공부서 작업기간 최소 1일, 최대 64일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관련 규정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조사표수록자료 제공시 개별사업체의 정보가 인지되지 않도록 사업체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자료의 값을 「×」 하여 제공

- 집계자료 중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업체 수 이외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 표시를 하여 제공
- 각 통계조사 간 연결 key 값 제공은 불가능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

-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통계청 예규 191호)

제8조(보존용 자료의 복제)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보존용 자료를 인수하는 즉시 자료소산을 위해 2부 이상 복제하여 보관한다.

제9조(보존용 자료의 소산)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불의의 재난이나 화재를 대비하여 복제된 보존용 자료를 통계청 본부 이외의 장소에 소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용 자료의 소산은 별도의 전산수록매체(LTO 등)에 따른 소산과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전산수록매체에 따른 소산은 창원자료관리센터 등에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은 보존용 자료 인수 즉시 국가 기간 정보시스템 공동백업센터에 실시한다.

제10조(보존용 자료의 관리)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료보관실을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관리대장기록유지)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보존용 자료의 인수, 복제, 소산 등 자료의 변동 사항을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2.9.7.>

제15조(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 ①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제공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등에 파일로 저장 보관할 수 없다.<개정 2016.01.28>

②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제공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복제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료제공부서에 통지한다.<개정 2012.9.7> <개정 2016.01.28>

제16조(자료의 유출방지) 보존용 전산자료는 자료 소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등 자료제공부서장의 사전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

제17조(자료보관실의 보안) 자료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계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모든 보안대책을 시행한다.<개정 2012.9.7>

7. 통계활용 실태

KOSIS 이용자 조회실적 : 802.6천건(2023.1.1.~2023. 12.3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실적 : 7,313건(2023.1.1.~2023. 12.31.)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 부서명 : 산업통계과

직급	인원	구체적인 통계업무	비고 (통계담당기간)
과장	1명	산업통계과 업무 총괄	
사무관	1명	광업제조업조사 업무 총괄	21년
6급	2명	광업제조업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조사항목 및 품목 등 조사부문 개선 잠정결과 및 확정결과 공표 조사지침서 및 입력시스템 지침서 발간 사이버교재 수정 및 보완	20년 이상
7급	2명	통합명부 작성 및 보완, 출력조사표 작성 행정자료 입수, 자료 변환, 대체 등 산업 및 품목별 시계열 자료 작성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KOSIS 서비스 조사표 등 조사용품 제작 및 발주 보고서 발간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5~8년
8급	1명	산업 및 품목분류책자 수정 및 보완 내검요원 채용 및 관리 중분류별 및 시도별 내용 검토	8년
공무직	1명	중분류별 및 시도별 내용검토 조사시스템 질의응답 관리	9년
		<공통업무> 조사원 지침서 교육 본조사 실시지도 및 종합내검 지도 중분류별 및 시도별 내용검토 사전업종 동향분석	

2. 자료처리 시스템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eco>) : 조사시스템관리과 개발·운영

2018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일정

- 조사방안개발
 - 지명일: 5.21 ~ 5.31 (8회)
 - 피자일: 6.18 ~ 6.19
- 조사원교육
 - 지명일: 6.7 ~ 6.16
 - 피자일: 6.4 ~ 6.15
- 본 조사
 - 6.20 ~ 7.24
- 조사표입력
 - 지명일: 6.20 ~ 7.31
 - 피자일: 6.27 ~ 7.24
- 본부제출공표
 - 8월 ~ 12월

□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외부	내부	DB	S/W
- 웹서버 4대 (1대 규격:4Core / 32GB) - WAS 3대 (1대 규격:12Core / 96GB)	- 웹서버 4대 (1대 규격: 4Core / 32GB) - WAS 3 대 (1대 규격: 10Core / 60GB)	- EXA-DATA(X3-2) HalfRack (4대) (1대 규격 : 8Core / 256GB) - SSD : 300G * 4	- OS : AIX6.1 - 웹서버 : SUNONE WebServer 6.1 - WAS : Web Logic Enterprise Server - JDK : 1.6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조사 정확성 제고

○ 행정자료 대체 항목

- 영업비용

- 조사대상 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개인 및 단독법인 이면서 활동업종에 겸업(광업제조업 이외 업종)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사업소득(복식) 자료의 비용 항목별* 일괄대체

*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영업비용, 영업비용, 영업이익(19개항목)

-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 조사대상 사업체 중 조직형태가 회사법인인 경우 법인세 자료의 동일 항목 일괄대체

IX.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UNSD(2007) 「STATISTICAL UNITS」
- EU(1993) 「COUNCIL REGULATION(EEC) No 696/93 of 15 March 1993 on the statistical units for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produ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OECD : <http://stats.oecd.org>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SIS_BSC_ISIC4
- 미국 : <http://www.census.gov/programs-surveys/asm/about.html>
- 캐나다 :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2103>
- 일본 : <http://www.meti.go.jp>
- <https://www.meti.go.jp/statistics/tyo/kougyo/>

3. 기타 문헌

- 정동명, 김혜원,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기준 검토연구(2004)
- 김경미, 광업·제조업조사 조사효율성 제고 방안(2007)
- 통계청,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2009)
- 이재형 외 「시장구조조사」 한국개발연구원(2017)